

「군포도시공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운영내규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포도시공사 사장 원 명 희



2021년 1월 21일

군포도시공사 내규 제42호

군포도시공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운영내규 제정안

제정 2021.01.21

제1조(명칭) 이 위원회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약칭 ‘성고충심의위원회’)라고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공사 본부장이 맡으며, 본부장 부재 시에는 공사 직제규정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위원장 역할을 수행한다.

④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들로 위촉한다.

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내부위원의 임기와 위원의 자격은 별도로 정하며 구체적 운영방침은 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른다.

⑥ 위원의 역할과 의무를 대신하는 대리인의 대리참석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으며 위임장 등 대리참석 관련 문서의 효력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⑦ 위원회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신고인은 위원회 위원 중 특정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은 본인과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성폭력 여부에 대한 판단(2차 피해 포함)
2.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재발방지에 관한 사항
3.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
4.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징계권고
5.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법률적 지원

④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최종 판단하여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한다.

제4조(조사 등 결과통지) ① 사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사건의 조사 등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2.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수당 등) 위원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또는 사건 조사에 참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 회의비, 식비 등 관련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기타 운영사항) ①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 사항은 공사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및 공사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매뉴얼, 운영과 관련된 별도 계획안을 적용한다.

② 운영에 필요한 서식은 ‘별지 제1호 ~ 6호’를 활용하며 그 외 서식이 필요할 경우 간사가 작성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③ 그 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회의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경영기획부
입 안 자	직 위 성 명	경영기획부장 이 현 동
	담당 성명 (전화번호)	황 기 성 (390-7606)

[별지 제1호서식]

심의위원 서약서

(공정심의, 개인정보보호, 비밀유지 등)

본인은 군포도시공사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심의위원회 업무에 성실히 임하여 양심에 따른 공정한 심의를 수행한다.
2. 사건 내용 및 신고인, 피신고인, 기타 관계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3. 심의를 통해 습득한 문서 및 인지한 모든 정보를 외부에 유출 및 누설 또는 제공하지 않는다.
4. 공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심의 종료 시 폐기해야 하며 (전자파일 형태 포함) 기본적으로 필사, 복사, 녹음, 촬영 등의 행위는 금지한다. 또한 타인이 열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5.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어떠한 책임이라도 감수한다.

년 월 일

본인은 위 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서명합니다.

연락처 :

성명 : _____ (인)

신고인 서약서

1. 중요사항 고지

- 1) 피해자(성희롱·성폭력 피해를 포함한 인권침해를 받았거나 권익침해를 받은 사람)는 대리인(단체 포함)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 공사의 사건조사에서 진술한 내용 및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은 녹음 및 채취가 이뤄지며, 위 녹취 자료는 심의위원회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3) 조사 내용은 공사 사장 및 심의위원회 등에 보고됩니다.
- 4)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 밖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5) 누구든지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이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2. 당사자의 의무 등

- 1) 당사자는 심의위원회의 조사절차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 2) 사건 내용 및 관련 인물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3) 당사자는 조사 및 심의위원회에서 진실만을 말해야 하며 위증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4) 질의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며,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없는 답변은 자제하여야 합니다.
- 5) 심의위원에 대하여 고지 받았으며, 사건을 조사하는 성고충상담원에게 기피사유가 없음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본인은 위 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서명합니다.

소속 :

연락처 :

성명 : _____ (인)

피신고인 서약서

1. 중요사항 고지

- 피신고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 1)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 2) 진술서, 소견서 등 자료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3) 구두 진술이 불가능할 경우 대리인과 동반 출석하거나 서면 제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4) 조사 절차 및 그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정보제공 및 서약내용

- 조사과정은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입니다. 피신고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사절차를 통해 가해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피신고인의 신분을 유지하며, 사건에 대한 비밀이 보장됩니다.
 - 1) 성고충상담원 조사 및 심의위원회 조사에 성실히 협조합니다.
 - 2) 공사의 사건조사에서 진술한 내용 및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은 녹음 및 채취가 이뤄지며, 위 녹취 자료는 심의위원회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3) 조사 내용은 공사 사장 및 심의위원회 등에 보고됩니다.
 - 4) 사건 내용 중 신고인의 신상정보(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은 비밀유지를 합니다.
 - 5) 조사 기간 중 신고인 및 증인에 대한 사적 접촉과 연락 금지합니다.
(문자, 메신저, 이메일 포함)
 - 6) 신고인 및 주변인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합니다.
 - 7) 피신고인은 조사 및 심의위원회에서 진실만을 말해야 하며 위증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본인은 위 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서명합니다.

소속 :

연락처 :

성명 : _____ (인)

참고인 서약서

1. 참고인 권리

- 1) 참고인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 2) 관련 자료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3) 구두 진술이 불가능할 경우 대리인과 동반 출석하거나 서면 제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참고인의 의무 등

- 1) 당사자는 심의위원회의 조사절차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 2) 공사의 사건조사에서 진술한 내용 및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은 녹음 및 채취가 이뤄지며, 위 녹취 자료는 심의위원회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3) 조사 내용은 공사 사장 및 심의위원회 등에 보고됩니다.
- 4) 사건 내용 및 관련 인물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5) 참고인은 조사 및 심의위원회에서 진실만을 말해야 하며 위증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6) 위 사항을 인지하였으며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본인은 위 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서명합니다.

소속 :

연락처 :

성명 : _____ (인)

민감정보처리 동의서

아래 사항에 대해 공사 성고충 관련 업무담당자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 1) 민감정보 처리목적 : 신고사건 처리
- 2) 민감정보 처리내용 : 신고사건 내용 및 손상정보
- 3) 민감정보 처리의뢰부서 : 공사 성고충심의위원회, 공사 해당부서(팀)
- 4) 민감정보 처리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3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 이용)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년 월 일

본인은 위 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서명합니다.

소속 :

연락처 :

성명 : _____ (인)

